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090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민형배 · 김우영 · 양부남  
이개호 · 김문수 · 이성운  
장경태 · 최혁진 · 박지원  
고민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

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위원장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구성되도록”을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②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③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⑥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참여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 따른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br>견 수렴·조정 등) ① ~ ④<br>(생 략)<br><u>&lt;신 설&gt;</u>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br>견 수렴·조정 등) ① ~ ④<br>(현행과 같음)<br><u>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br/>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시<br/>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br/>렴하여야 한다.</u>                    |
| <u>⑤ · ⑥</u> (생 략)                                                                                                                | <u>⑥ · 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br>과 같음)                                                                                                                    |
| 제16조( <u>국민참여위원회</u> ) ① 사회<br>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br>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br>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br>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br><u>국민참여위원회</u> 를 둔다. | 제16조( <u>시민참여배심위원회</u> ) ① -<br>-----<br>-----<br>-----<br>-----<br>---- <u>시민참여배심위원회</u> -----<br>-.                                                  |
| ② <u>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br/>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br/>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br/>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u>                                                | ② <u>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다음<br/>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u><br>1. <u>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br/>관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br/>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문을<br/>요청하는 사항</u><br>2. <u>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u> |

<신 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  
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③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민참여배심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시민참여배심위원회--  
-----  
-----구성하  
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

1.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업무  
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  
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 · 문화 · 언론 · 고용 · 산  
업 · 복지 · 과학기술 등 각 분  
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다.

<신 설>

<신 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 시민참여배심위원회-----  
-----  
-----  
-----  
-----.

⑥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  
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  
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⑦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배  
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